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흡연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
2.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3. 수동식 소화기, 마른 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제2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법	

경우 1) 승인가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 을 신청한 경우 2) 승인가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 을 신청한 경우 3)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39조제1항제 1호	250 400 5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 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39조제1항제 2호	250 400 500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 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1)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3호	250 350 500 500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4호	250 350 500 500
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법 제39조제1항제 5호	250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50 500 500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5호의2	250 350 500 500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5호	250 350 500 500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6호	250 350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0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6호의2	
1) 1차 위반 시		250
2) 2차 위반 시		400
3) 3차 이상 위반 시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	
1) 1차 위반 시		250
2) 2차 위반 시		400
3) 3차 이상 위반 시		500
카.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2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50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400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
타.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3	
1) 1차 위반 시		250
2) 2차 위반 시		400
3) 3차 이상 위반 시		500
파.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4	
1) 1차 위반 시		250
2) 2차 위반 시		400
3) 3차 이상 위반 시		500
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8호	
1) 1차 위반 시		250
2) 2차 위반 시		400
3) 3차 이상 위반 시		500

거.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 9호	
1) 1차 위반 시		250
2) 2차 위반 시		400
3) 3차 이상 위반 시		5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u> <u>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u> <u>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u> <u>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기준</u> <u>·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u> <u>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u> <u>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u> <u>장이 없는 위치일 것</u> <u>2.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u> <u>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u> <u>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u> <u>할 것</u> <u>3. 수동식 소화기, 마른 모래 또</u> <u>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u> <u>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u> <u>수 있는 조치를 할 것</u>
제2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	제21조(권한의 위임) ----- ----- ----- -----. ----- ----- ----- -----

다. 1. ~ 11. (생략) <u><신설></u>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482